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5.

특 허 청  
산업재산인력과

## 1. 개정이유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내용인 이론교육, 현장연수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일부인정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7조)

변리사법 시행령 안 제12조에서 정한 이론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실무수습 대상자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경우 해당 이론교육의 일부 인정 기준, 현장연수의 일부 인정의 세부사항을 개정함

나. 이론교육 기관의 실무수습 절차, 현장연수 기관의 요건 등 규정 (안 제7조의2)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현장연수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을 정하고,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을 부적합하게 시행한 경우 실무수습의 정지 및 불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실무수습 확인서 발급, 부정확한 실무수습 확인서에 대한 조치 등 규정(안 제7조의3)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게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장연수 기간의 인정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라. 실무수습이 자격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로,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을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기관이 발행한 변리사 실무수습 확인서(이하 ‘실무수습 확인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확인서의 진위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3조”로,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을 “변리사 자격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으로, “자격증 사본과 수료증 사본”을 “자격증 사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무수습)”을 “(실무수습의 내용 및 일부 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론교육의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 ② 이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론교육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이론교육 내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표2에 따라 그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현장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변리사 시험 합격 이전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전에 현장연수에 상응하는 실무를 한 경우 별표3에 따라 그 기간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실무수습의 내용, 일부 인정 기준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의 업무 수행 등) ①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이론교육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론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세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론교육 기관은 이론교육을 종료한 후에 실적과 명단을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현장연수 기관은 현장연수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이론교육 기관 또는 현장연수 기관에 실무수습의 정지, 불인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실무수습의 정지, 불인정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3(실무수습의 확인서 등) ①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의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게 그 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현장연수 기관에서 현장연수를 한 자의 현장수습 기간은 월 단위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③ 특허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한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에 대해 실무수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 실무수습의 불인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금지, 불인정 등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격 취득 방법란에 “[ ] 시험 합격자( 년도 제 회)”

다음란에 “[ ] 변호사”란을 신설하고, 첨부서류란에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다음 줄에 “변리사 실무수습 확인서(신규 신청자에 한함)”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에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리사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리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서식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u>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u></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변리사 자격증) ① ----- ----- <u>제3조-</u> ----- ----- ----- ----- -----<u>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기관이 발행한 변리사 실무수습 확인서(이하 ‘실무수습 확인서’라 한다)를</u>----- -----<u>. 다만,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u></p> <p>② <u>특허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확인서의 진위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  
(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  
과 변리사 실무수습 수수료 여부  
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상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  
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과 수수료증 사본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  
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② ----- 법 제3조-----  
-----  
-----변리사 자격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상  
을 통하여 확인-----  
-----  
-----  
-----자격증  
사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수습의 내용 및 일부  
인정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 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신 설>

따른 이론교육의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이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론교육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이론교육 내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표2에 따라 그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현장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변리사 시험 합격 이전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전에 현장연수에 상응하는 실무를 한 경우 별표3에 따라 그 기간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실무수습의 내용, 일부 인정 기준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의 업무 수행 등) ①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론교육 기관은 제1항에 따

라 이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론교  
육 개시 30일 전까지 세부계획  
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론교육 기관은 이론교육을  
종료한 후에 실적과 명단을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현장연수 기관은 현장  
연수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 내지 제4  
항을 위반한 이론교육 기관 또  
는 현장연수 기관에 실무수습의  
정지, 불인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실  
무수습의 정지, 불인정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  
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3(실무수습의 확인서 등)

①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의 실무  
수습을 받은 자에게 그 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

<신 설>

서식에 따른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현장연수 기관에서 현장연수를 한 자의 현장수습 기간은 월 단위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③ 특허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한 이론 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에 대해 실무수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 실무수습의 불인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금지, 불인정 등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 <신설>

**변리사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세부 내용** (제7조제1항 관련)

1. 실무수습 이론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4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변리사의 직업윤리 등 소양 교육 : 20시간 이상

나.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 : 80시간 이상

다.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등 법률 기본이론 교육 : 100시간 이상

라. 명세서 작성법, 의견서·보정서 작성법, 심판·소송 서류 작성 등 실무 교육 : 200시간 이상

[별표 2] <신설>

**변리사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과목의 일부 인정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서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이수한 자, 사법연수원에서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이수한 자, 변호사 시험 또는 사법시험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는 별표1 제1호 다목의 해당 법률 과목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소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신규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심판소송제도과정 등에서 법률 이론 및 실무 교육 등을 이수한 자는 별표1 제1호의 해당 과목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는 별표1 제1호 라목 중 심판·소송 서류 작성 과정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의 일부면제로 합격한 자 제외) 또는 이·공계 및 이에 상응하는 학사 학위 이상을 마친 자는 별표 제1호 나목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변리사 실무수습 중 현장연수 기간 인정 기준 (제7조제3항 관련)**

1. 실무수습 대상자가 사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연수 10월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 나. 기업·연구소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
  - 다.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기관·행정기관·비영리법인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2. 실무수습 대상자가 사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연수 5월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 나. 기업·연구소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 다.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기관·행정기관·비영리법인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3.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만큼 현장연수 기간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 신규 [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b>3일</b>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소	
등록기준지		

자격 취득 방법

- 시험 합격자(      년도 제      회)
- 변호사
- 공무원 경력자

재발급 사유 (자세히 적으십시오)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리사 자격증의 ([ ] 발급, [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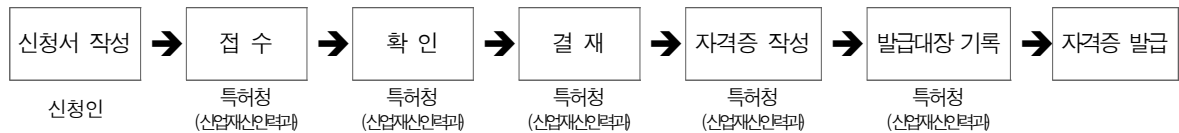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b>변리사 실무수습 확인서(신규 신청자에 한함)</b>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7.28>

## 변리사 실무수습 확인서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영문)	
주소			

실무수습	실무수습 종류	이론교육 [    ]	현장연수 [    ]
	실무수습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개월    일)	
	실무수습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자격 취득 근거	<input type="checkbox"/> 「변리사법」 제3조제1호(    년도 제    회) <input type="checkbox"/> 「변리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	---

실무수습 기관		실무수습 기관 주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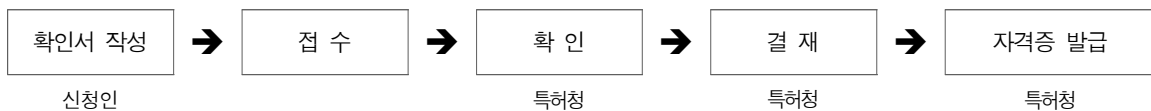
「변리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신청인이 실무수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무수습 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 허 청 장 귀중

첨부서류	1. 실무수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세부사항 포함), 실무수습 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 및 수행 업무 등 2. 이론교육 인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론교육 과목의 일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현장연수 인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연수 기간의 일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리사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7.28>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등록신청서**  
( [ ] 신규 [ ] 재등록 [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영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학력 및 전공	( )년 ( )월 ( )대학/대학원 ( )학과 졸업	주요 경력	( )년 ( )월~( )년 ( )월 ( )근무	

사무소 (예정)	명칭	(한글)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주소	(한글)	변리사 인감 (인감 날인)		
		(영문)			

자격 취득 근거	[ ] 「변리사법」 제3조제1호( 년도 제 회) [ ] 「변리사법」 제3조제2호 [ ] 공무원 경력자	자격증 번호	제 호
----------	--	--------	-----

재발급 사유 (자세히 적으십시오)	
-----------------------	--

「변리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록신청,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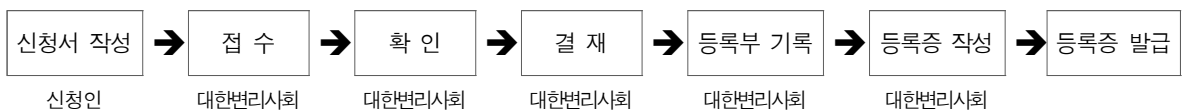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1.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수수료 20만원 (재발급 시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 481 - 5187